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16331
등록일자	2016.4.5.
결재일자	2016.4.6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생활보장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		
정승은	정재하	이규형	전결 04/06 김효길		
협조자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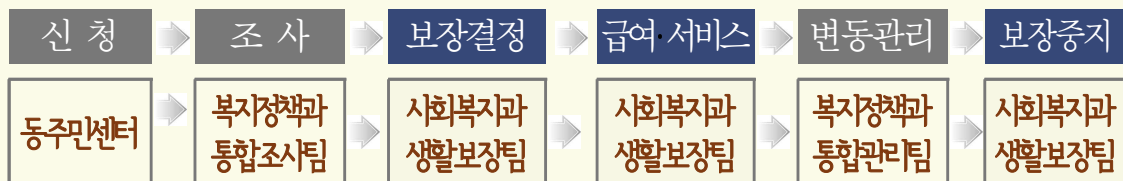
『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 지원을 위한』

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계획

■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
- 선정기준
 -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
 - ※ 부양의무자 기준 : 소득, 재산기준 동시 충족
- 지원내용 :
 - 생계급여 : 최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급여의 1/2 수준
 - 해산·장제급여 :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

■ 업무흐름



■ 지원 인원 및 소요예산 : 60가구 81명, 22,000천원 예상(시비 100%)

강 남 구
(사 회 복 지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·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~3조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· 추진경위 :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추진 계획(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추진 계획(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대상 : 저소득 주민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)</td> </tr> </table> <p>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서울시 전체 시행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· 미해당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계획

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사업개요

■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~3조
-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추진 계획 [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492(2016.1.8.)호]

■ 추진개요

- 지원대상 :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
- 지원인원 : 60가구 81명(2016.3월말 기준)
- 지원내용
 - 생계급여 :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급여의 1/2 수준(최대지원액)
 - 해산·장제급여 :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

※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'15.12.31.로 교육급여 지원 종료
- 소요예산 : 22,000천원 예상(시비 100%)

II 세부 추진 계획

■ 선정기준

- 거주기준 : 세대주의 서울시(주민등록 기준)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

○ 소득기준 :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0%이하

(단위 : 원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기준중위소득 100%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	6,828,680
('16년 소득기준)	649,932	1,106,642	1,431,608	1,756,574	2,081,540	2,406,506	2,731,473

☞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
※ 보장기관 확인소득, 무료임차소득,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

○ 재산기준 :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(일반재산+자동차+금융재산-부채)

-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

- 제외 대상 : 금융재산 2,000만원 초과, 소득환산율 100% 적용 자동차 소유자

○ 부양의무자 기준

- 부양의무자 범위 :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) 및 배우자(며느리, 사위)

- 부양의무자 소득기준

·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적용하되, 수급자는 2인가구 기준으로 적용

· 가구 규모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부양의무자의 세대원 (가구원 포함)							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
기준중위소득 100%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	6,828,680	
기준중위소득 40%	649,932	1,106,642	1,431,608	1,756,574	2,081,540	2,406,506	2,731,473	
대상가구	'16년	4,356,304	5,201,217	5,802,405	6,403,592	7,004,779	7,605,966	8,207,155

※ 산출식 (보건복지부 자료 참조) : {(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% +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%)×185%} +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%

-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: 가구당 5억원 이하

■ 급여지원 기준

○ 생계급여

- ('15년) 3등급 정액급여 지원 ⇒ ('16년)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

※ 소득대비 차등급여 : 2016년 1월부터 적용

{지원급여액 =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- (0.24 × 해당가구 소득평가액)}

(단위 : 원)

구 분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최대 지원	소득평가액	0	0	0	0	0	0	0
	생계급여	235,601	401,158	518,958	636,758	754,558	872,359	990,159
~								
최소 지원	소득평가액	649,932	1,106,642	1,431,608	1,756,574	2,081,540	2,406,506	2,731,473
	생계급여	79,617	135,564	175,372	215,180	254,988	294,798	334,605

- 최대급여액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의 1/2수준
- 최소급여액 :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최대급여액의 1/3 수준

-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'15년 이전 보장결정 대상가구의 급여가 감소한 경우, 감소한 금액(이행기 보전액)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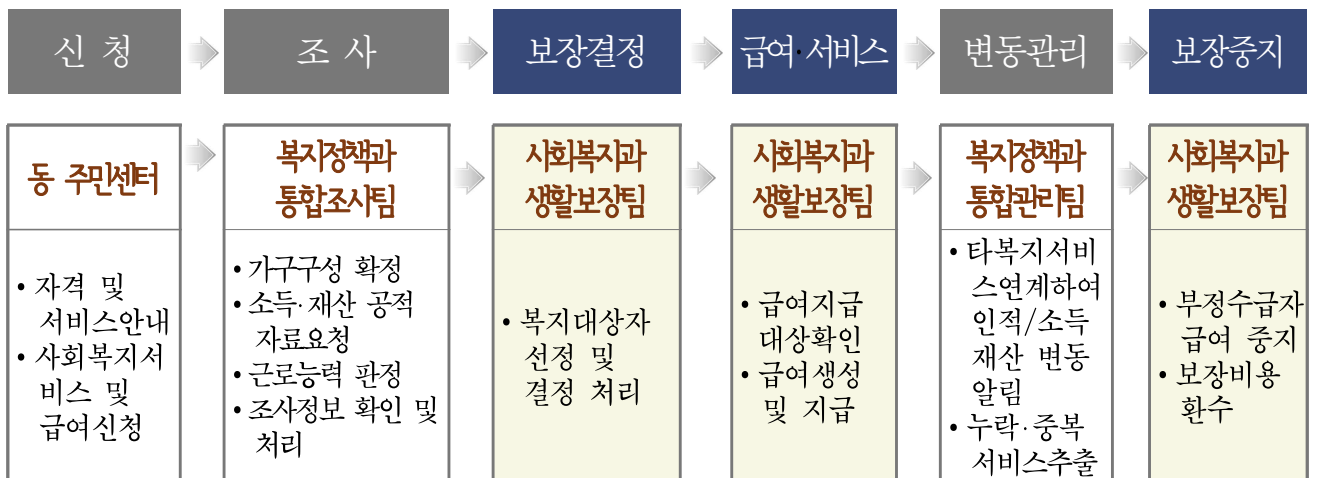
○ 해산·장제급여(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)

구 분	해산급여	장제급여
지원대상	대상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	대상자가 사망한 경우
급여내용	출산 시 1인당 600천원(쌍둥이는 1,200천원)	사망자 1구당 750천원

■ 운영체계

○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신청과 병행처리하고, 공적 자료 조회·회신 확인 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

○ 업무처리 프로세스



■ 업무처리 방법

○ 신청 및 접수

- 초기 상담 후 신청서,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
- 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
- 기초생활보장(맞춤형급여 통합신청) 및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연계 신청 병행 접수

※ 맞춤형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택 불가

※ 신규 신청자가 기초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기준에는 적합하나 자활사업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,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제한

○ 조사 및 선정

- 신청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
-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확인 및 선정
 - ※ 근로능력 판정은 기초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

○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등

- 급여종류 : 생계급여, 해산·장제급여
- 지급기준(내용) 및 방법 : 붙임 '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' 참조
- 가구원 변동, 취업상태, 소득·재산 등 변동사항 사후관리
- 보장기간 경과, 변동사항으로 선정기준 초과자 급여 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

III

행정사항

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 가구 적정 관리

■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

- 붙임 1.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(메뉴얼) 1부.
2.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1부. 끝.